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8월 2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2024년 9월 5일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

나.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재)새마을재단에서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구미시에서는 사업 동참을 통하여 새마을종주도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3

차년도 소요예산을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새마을재단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새마을재단
- (2) 출연금액 : 금150백만원 (3차년도 소요예산)
- (3)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간)
- (4) 사업내용 :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 (5) 출연근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주요 사업

- (1) 해외시범마을 조성
- (2)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
- (3) 소득 증대사업
- (4)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

○ 출연의 필요성

- (1)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 (2)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 (3)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3) 새마을운동 가치 계승·발전

○ 추진실적

- (1) 1차 조성지(완료)
 - 대상마을 :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9년 5월
- 사업비 : 총 750백만원 (연 150백만원)
- 참여기관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구미시, 코이카
- 사업내용
 -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및 해외시범마을 조성
 -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월 1회 140명)
 - 새마을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월 1회 140명)
 - 버섯협동조합 센터 건립 및 주민체육시설 설치
(재배사, 배지 작업장, 살균실, 배양실, 사무실, 조합원 교육장 등)
 - 해외디벨러 버섯협동조합원 구성(127명)
 - 주민 공동우물 설치(고성능 펌프 및 급수 배관)
 - 현지 주민대상 물탱크 지원
 - 학교 환경개선사업(천장 설치, 조명등, 선풍기 설치 등)

(2) 2차 조성지(진행중)

- 대상마을 : 베트남 박닌성 박닌시 보경동 화딘마을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사업비 : 총 750백만원 (연 150백만원)
- 참여기관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구미시
- 사업내용
 -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
 - 거버넌스 구성 (마을총회, 새마을회의 등)
 - 교육활동(새마을교육, 주민의식, 협동조합, 농업기술교육 등)

- 소득증대 사업(스마트팜 사업(양배추, 토마토 등 채소 재배)) 및 브랜드개발
- 농업용수 관정 및 창고 설치, 수경재배 지원 등 도시농업
-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 추진실적
 - 지역거버넌스구축 회의 진행
 - 스마트 근교농업 개발계획 조사 완료
 - 찾아가는 새마을연수 실시
 - 협동조합 교육, 새마을회관 IT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새마을농장 조성 및 자체브랜드 개발
 - 마을회관 개보수 및 협동조합 전국총회 개최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출연안은

- (재)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비 지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새마을 운동 종주도시인 구미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출연재단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며 새마을재단 운영의 문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새마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금까지 세심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음. 해당 예산은 구미시 새마을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